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8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민형배 · 주철현 · 김문수
이성윤 · 양부남 · 이개호
안도걸 · 조인철 · 김우영
정준호 · 문정복 · 최혁진
정진욱 · 조계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통관번호, 주소, 현관 출입 정보 등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까지 유출되는 심각한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핵심적인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조치를 주로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 책임과 의무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사실 확인,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호 조치 등 대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개별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유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온라인 조회 수단 제공, 상담·피해구제 전담 창구 설치 등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제29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을 “확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치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제3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유출등이 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2.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한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호,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예방 방법의 안내 및 지원
3.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상담·피해 구제 신청을 전담하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u>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 <u>확보</u> ----- -----.
<u><신 설></u>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치
<u><신 설></u>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u><신 설></u>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u><신 설></u>	4. 그 밖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정
보주체가 온라인을 통하여 자
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유출등이 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2.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내
용 및 특성을 고려한 비밀번호
호 변경, 계정 보호,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피
해 예방 방법의 안내 및 지원
3.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와 관
련한 상담·피해 구제 신청을
전담하는 창구의 개설 및 상

③ · ④ (생략)	<u>담요원의 배치</u> ③ · ④ (현행과 같음)
------------	----------------------------------